

출 장 복 명 서

I. 출장 개요

1. 출장건명: 일본의 지방농정체계 및 농업회의소 조사

2. 출장목적:

- 우리나라의 지방농정조직 및 거버넌스 개편방향을 도출함에 있어 선진국의 지방농정 추진체계 및 거버넌스 제도를 조사하여 시사점을 얻고자 함.
- 특히 일본은 농림수산성의 외국(外局)으로서 권역별로 지방농정국을 두고 있으며, 농업계 대표조직으로서 농업회의소가 운용되고 있는 것이 특징임.
- 이번 출장에서는 지방농정국과 관련한 지방농정 추진체계, 농업회의소 및 양자의 관계에 초점을 두고 조사를 할 계획임.

3. 출장지역: 일본 동경, 사이타마현 등

4. 출장기간: 2010년 9월 7일~ 9월 11일(4박 5일)

5. 출 장 자

부서명(기관명)	직 급	성 명
농업농촌정책연구본부	초청연구원	김 광 수

6. 출장일정

일 정	방문기관	업무내용
9. 7(화)	출국(김포~하네다)	
	농림수산성(대신관방 지방과)	- 일본의 농정추진체계 및 각 농정조직의 역할 - 지방농정국 및 지방농정사무소의 도입 이유 - 지방농정국에 대한 평가 및 향후 계획
9. 8(수)	전국농업회의소	- 농업회의소의 조직, 구성원 및 업무 - 농업회의소 계통조직 간 관계 및 역할 차별성 - 농업계의 대표성 정도와 농정 거버넌스로서 역할
	농림수산성(경영국 구조개선과)	- 전국농업회의소 위탁업무 - 전국농업회의소 예산지원 및 기타 지원 - 전국농업회의소의 농정에의 답신에 따른 반영 정도 - 농정 거버넌스로서의 역할 평가
9. 9(목)	관동지방농정국	- 지방농정국의 도입 이유 - 지방농정국의 업무 및 다른 농정조직과의 차별성 - 지방농정국에 대한 평가 및 향후 계획
	사이타마현청	- 현청의 업무 영역 - 지방농정국 및 지방농정사무소와의 업무 차별성 - 현 농업회의 예산지원 및 기타지원 - 현 농업회의의 농정 거버넌스로서의 역할 평가
9.10(금)	사이타마현 농업회의	- 농업회의 업무와 그 비중 - 농업회의소 계통조직 간 관계 - 농업계의 대표성 정도와 농정거버넌스로서 역할
	시정춘사무소 및 농업위원회	- 현청, 지방농정국과의 업무 관계 - 지방농정국 및 현청에 대한 평가 - 농업위원회의 업무 및 농정거버넌스로서 역할
9.11(토)	귀국(하네다~김포)	

7. 주요 방문기관 및 면담자

소속기관	직 급	성 명	연 락 처
농림수산성 대신관방 지방과	과장보좌	武藤 明子	03-6744-2009 akiko_muto@nm.maff.go.jp
관동농정국	기획조정실 기획관	金田 直樹	048-740-0304 naoki_kaneta@kanto.maff.go.jp
	기획조정실 계장	長瀬 亮	048-740-0018 akira_nagasawa@kanto.maff.go.jp
농림수산성 경영국 구조개선과	과장보좌	高橋 造吉	03-6744-2152 hiroyoshi_takahashi@nm.maff.go.jp
	계장	小倉 宏一郎	03-6744-2152 koichiro_ogura@nm.maff.go.jp
전국 농업회의소	총무주간	川村 修身	03-6910-1121 kawamura@nca.or.jp
	농지·조직대책부 주사	荒井 宏樹	03-6910-1126 hi_arai@nca.or.jp
사이타마현청	농업정책과 주사	臼倉 弘高	048-830-4031 usukura.hirotaka@pref.saitama.lg.jp
	농업정책과 주간	黒澤 史明	048-830-4025 a4010@pref.saitama.lg.jp
	농업정책과 직원	廣澤 邦美	048-830-4025 a4010@pref.saitama.lg.jp
사이타마현 농업회의	사무국장	南木 和之	048-829-3481
	사무국차장	渡辺 義邦	048-829-3481
사이타마시 농업위원회	농지조사과장	厚澤 啓二	048-829-1900 nochi-chosei@city.saitama.lg.jp
	농업진흥과장	佐藤 裕一	048-829-1802 nogyo-shinko@city.saitama.lg.jp

II. 주요 출장 결과

1. 지방농정국

□ 일본의 농정조직

- 농림수산성은 수산청과 임야청 등 2개의 외청(外廳)과 6개의 내국(內局), 7개의 외국(外局)을 두고 있음.¹⁾
 - 내국(內局)은 대신관방, 종합식료국, 소비안전국, 생산국, 경영국, 농촌진흥국 등 6개 국이 기능별로 나뉘어져 있음.
 - 외국(外局)은 지방농정국을 지칭하며 전국을 7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권역별로 하나의 지방농정국을 두고 있음.

□ 지방농정국 조직체계

- 지방농정국은 기획조정실, 총무부, 소비·안전부, 식량부, 생산경영유통부, 농촌계획부, 정비부, 통계부로 구성되며, 그 외에 지방농정사무소, 통계·정보센터, 사무소 및 사업소 등을 두고 있음.
- 지방농정사무소²⁾는 2003년 식량청 폐지에 따라 종전의 식량사무소가 개편된 조직으로 지방농정국이 설치되지 않은 전국 39개 현에 소재하고 있음.
 - 지방농정사무소는 총무과, 농정추진과, 소비·안전부, 식량부, 통계부 등을 두고 있음.
- 지방농정사무소에 통계·정보센터 151개소를 두고 있으며 이에 속하지 않는 통계·정보센터는 25개소로 지방농정국 내 총 176개소의 통계조직을 두고 있음.
- 지방농정국과 지방농정사무소에는 지역과(地域課)를 두어 관할 지역의 소비안전 업무와 식량업무를 담당하게 함.
 - 지방농정국에 속하는 지역과는 25개소, 지방농정사무소에 속하는 지역과는 107개소로 총 132개소임.
 - 지방농정사무소에 속하는 지역과는 농정사무소가 소재하는 구역을 제외한 도도

1) 박성재 외. 2008. 「선진국형 농정으로의 전환을 위한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北海道에는 지방농정국이 아닌 농정사무소가 설치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농정사무소가 지방농정국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부현 내 다른 구역에 소재함.

- 지방농정국은 정원이 13,210명(2010년 4월 현재)으로 약 4천 명에 이르는 농림수산성 정원의 4배 이상이며, 지방사무소 39개소, 지역과 132개소, 통계정보센터 176개소 등 347개소에 이르는 지역 거점을 두고 있는 조직임.
- 지방농정국은 직원 수가 2천 명 정도로 규모가 작았으나 2003년 식량사무소가 지방농정사무소로 개편되면서 2003년 말 정원이 19,226명으로 규모가 매우 커졌음. 다만 최근 꾸준한 구조조정으로 정원 수를 줄이고 있음.

그림. 지방농정국의 조직 체계



□ 지방농정국의 설치와 변천

- 농림수산성이 지방의 실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로 직접 정책을 집행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 일었고, 이에 지방 실정에 맞게 정책을 집행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지방농정국이 1963년 도입되었음.
- 지방농정국이 도입되기 이전에는 농림수산성의 농지과, 식료과, 통계과, 어업임업과 등 각 과가 개별적으로 농업정책을 실시하였으나, 이러한 비판 속에서 초기에는 농지과만을 대상으로 지방농정국을 설치하였다가 추후 식료과, 통계과, 어업임업과 등이 농정국에 편입되었음.
- 1970년 통계조직이 지방농정국에 편입되면서 통계업무를 담당하게 되었음.
- 2001년 일본의 중앙성청 재편에 따라 농림수산성과 그 산하 지방농정국도 조직개편이 이루어졌음.

- 당시 조직 개편으로 지방농정국 내에 기획조정실, 총무부, 생산경영부, 농촌계획부, 정비부, 통계정보부 등을 두고, 그 외 통계정보사무소, 사업소 등을 두게 되었음.
- 그 동안 식품 안전 문제가 발생하면서 식품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었고, 이를 계기로 2003년에 농림수산성의 조직 개편이 이루어졌으며, 소비·안전부가 설치된 것이 특징임.
- 일본 내 BSE(소해면상뇌증, 일명 광우병)가 발생하였고, 식품표시 부정 문제가 빈번하게 일어나면서 농림수산성은 식품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농민에서 소비자를 중심으로 하는 조직 개편을 단행하게 된 것임.
- 농림수산성 내 소비·안전부가 설치되었고 농림수산성의 외청인 식량청이 폐지되면서 지방농정국 내 소비·안전부와 식량부가 설치되었음. 또한 도도부현에 설치되어 있던 식량사무소는 지방농정사무소로 개편되었음.
- 2006년에는 지방농정국 내 별도로 존재하던 지방농정사무소와 통계정보센터를 통합하는 작업이 이루어지면서 현재와 같은 조직체계가 갖추어졌음.
- 통합 후에도 별도로 존재하는 통계조직이 있으나 대부분은 지방농정사무소 내에 통계조직이 편입되면서 지방농정사무소에서 농림통계 업무를 담당하게 됨.
- 2007년 수전·전작경영소득안정대책(품목횡단적 경영안정대책)이 본격적으로 실시되면서 지방농정사무소에서는 이전의 소비·안전, 식량, 농림통계 등의 업무에 더해 소득안정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게 됨.
- 최근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면서 호별 소득보전제도로 전환·시행되었고 이와 관련한 접수 업무를 맡고 있음.

□ 지방농정국의 주요 업무

- 지방농정국의 주요 업무는 표시·일본규격(JAS)·이력추적 등 식품의 안전안심업무, 현장 검사업무, 생산조정을 포함한 쌀 수급계획 작성, 농산물 검사 확인, 농업진흥지역 정비계획, 토지개량사업 실시, 통계 관련 업무 등임.
- 다만 권역별로 농업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농정국에 따라 중점을 두고 있는 업무가 다를 수 있음. 예를 들어 관동농정국은 대도시인 도쿄 인근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식품표시 문제, 동북 지역은 낙농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지방농정사무소는 조직 개편을 거치면서 현장성이 강한 식량 업무, 소비안전 업무, 농림통계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최근 경영안정대책과 관련한 업무를 하고 있음. 이 중에서 소비·안전 업무와 호별 소득보장과 관련한 업무 비중이 높음.
- 지방농정사무소 내에 주로 설치되어 있는 지역과와 통계정보센터는 지역에 밀착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지역과는 각 관할 지역의 소비안전 업무와 식량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통계정보센터는 각종 농림수산통계조사, 농림수산업에 관한 정보 취급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음.

□ 지방농정국에 대한 평가

- 농림수산성은 정책을 기획하고 수립하는 역할을 하고, 지방농정국이 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방 실정에 맞는 정책을 실시한다는 측면에서 지방농정국은 도입 필요에 따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그러나 도입 이후 조직개편에 따라 업무영역이 농림통계, 식량, 소비안전, 소득보전 등으로 확대되었고, 최근에도 농림수산성 개편에 따른 지방농정국의 조직 개편이 논의되고 있어 지속적이고 일관된 업무 추진에 문제가 있음.
- 한편 지방농정국과 현청(縣廳)과의 관계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관계로서 현과는 법률적으로 업무 중복은 발생하지 않음. 그러나 실제로 식품표시 업무, 농협 감독 업무, 토지개량구 감독 업무 등에서 역할 분담을 하고 있음.³⁾
 - 현청에서 농림수산성으로 직접 업무 연락을 취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지방농정국의 해당 부서와 업무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있음.
 - 식품표시와 관련하여 규모가 크거나, 농협이나 토지개량구 감독에 있어서 복수 현을 관할하는 경우에는 지방농정국에서 담당하고 그 외에는 현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 지방농정국은 현청에 비해 관할 구역의 범위가 넓기 때문에 복수 현이나 전국 단위에서 일어나는 식품안전 또는 생산조정 문제에 있어서 보다 나은 대응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음.

3) 관동농정국 담당자와 사이타마현 담당자 모두 업무 중복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음.

□ 지방농정국 개편안

- 국가기관의 지방사무소가 지나치게 방대해지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지방농정국의 개혁을 검토 중임. 농림수산성의 지방농정국도 최근 4년간 인원을 줄이고 있으며 농림수산성 개편과 함께 지방농정국도 개편할 계획임.
 - 2007년 부패된 쌀 유통사건 등이 문제되면서 농림수산성 개편의 배경이 되었음.
 - 2010년 농림수산성 개편안이 전체적으로 제시되었고, 그 일환으로 지방농정국의 개편안도 제시되었으나 개편안에 관한 법률(농림수산성설치법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하였음. 이때 제시된 지방농정국의 개편안은 2007년에 제시되었던 것과 다르지 않음.
- 농림수산성 내부에서는 중앙농정과 관련하여 농림수산성, 지방농정국, 지방농정사무소 등 3단계 체제로 되어 있어서 상향식, 하향식 모두 의사전달이나 의사소통에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어 조직 개편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 또한 최근 4년 동안 매년 약 1,000명씩 인원 감축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영세한 농정국이 생기고 있어서 이에 대한 대응 방안도 모색되어야 하는 실정임.
- 지방농정국과 관련한 조직 개편의 골자는 지방농정사무소를 지역센터로 개편한다는 것임.
 - 지역센터는 농정그룹과 소비안전그룹으로 구성되고 정원은 100명 정도의 규모로 구상하고 있음.
 - 현재 지방농정사무소, 지역과, 통계정보센터 등 347개소의 지역 거점을 두고 있으나 이를 65개소의 지역센터와 함께 38개소의 주재소⁴⁾(가칭)로 슬림화한다는 계획임.

□ 시사점

- 역할 측면에서 지방농정국과 같은 정책 집행기관이 필요하다고 보임.
 - 일본에서는 사회복지 부문에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있어서 행정에서 농업생산 기반에 인력과 예산을 늘리기가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지방농정국 개편 논의에도 불구하고 생산이력제와 같이 지방에서 기획·실행하기 어려운 사업을 국가

4) 주재소는 지역과보다 작은 규모로 접근이 어려운 지역에 1~2명이 주재하는 곳을 말함.

가 담당할 수 있도록 중앙사무를 집행하는 기관이 지방에 필요하다는 입장임.

- 그러나 도입 이전에 우선적으로 국가와 지자체 간 업무를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가 명확히 설정되어야 함.
 - 규모의 크기, 파급 영향에 따라 국가사무와 지방사무를 구분하고, 식품표시와 생산이력 등과 같이 중요성이나 규모가 큰 문제는 국가가 담당하고 이를 집행할 기관을 두어야 할 것임.
- 또한 지방농정국과 같은 집행기관 도입은 새로 기관을 설치하는 방식보다는 기존의 기관에 중앙사무를 담당하도록 하는 방식을 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기관의 선정이나 업무의 재조정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함.
 - 일본의 지방농정국은 초기 농지사무소를 개편한 조직이고 이후에도 조직 개편을 통해 업무가 재조정되었음.
 - 업무 조정을 통해 기존 기관이 도입 취지에 맞게 중앙사무를 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타 기관과 업무 중복이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함.
 - 기존 기관을 이용할 경우 그 기관의 업무 영역 때문에 지방농정국을 도입하는 취지가 퇴색할 가능성이 있음.
- 지방농정국 도입 시 농림수산성에서 정책을 기획·수립하고 지방농정국에서 집행하는 기능을 하도록 역할이 나뉘어져야 하며, 또한 지방농정국과 도청 사이에도 역할 배분이 이루어져야 함.

2. 전국농업회의소

□ 전국농업회의소의 설치 및 조직 구성

- 전국농업회의소는 농업과 농민의 입장을 대표하는 조직으로서 농업 생산력의 향상 및 농업 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하여 농민의 지위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농업위원회등에관한법률」에 근거하여 1954년 설립되었음.
 - 농지개혁 이후에 시정촌에 설치되어 있었던 농지위원회, 농업조정위원회, 농업개량위원회가 1951년 통합되어서 농업위원회가 되었으며, 당시 도도부현에는 농업위원회, 전국 단위에는 전국농업위원회협의회가 있었음.
 - 전국 단위의 농정조직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전국농업회의소가 1954년에 설치되었으며, 도도부현 농업위원회는 농업회의로 바뀌게 되었음. 시정촌 단위는 농업

위원회로 지속됨.

- 그 당시 전후 식량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관련 단체를 통합해야 하고, 농가 지도를 위해서 농정지도단체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그러나 단체 개편 시 농협계통(당시 산업조합), 농업회의소가 정치적인 문제로 통합되지 못하고 분리된 채로 지속되고 있음.

- 농업위원회 계통조직은 전국농업회의소, 현농업회의, 시정촌농업위원회 등 3단계 조직으로 되어 있음.
 - 시정촌농업위원회는 농업위원으로 구성되며 평균적으로 21명 수준임.
 - 현농업회의는 농업위원회장과 현 단위의 농업단체로 구성됨.
 - 전국농업회의소는 농업회의장과 전국 단위의 농업 관계 단체로 구성됨.
- 전국농업회의소 조직은 총무부, 농정대책부, 농지·구조대책부, 신규 취농상담센터, 신문사업 본부, 출판부로 구성되어 있음.

□ 전국농업회의소의 주요 업무와 역할

- 전국농업회의소의 주요 업무(사업)는 법률과 정관에 그 내용이 정해져 있음.
 - 농업·농민의 의견에 관한 의견 공표, 행정청에 건의, 자문에 대한 답신
 - 농민에 대한 정보 제공
 - 농업과 농민에 대한 조사와 연구
 - 농업회의에 관련된 지도 및 연락 업무
 - 그 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업무
- 전국농업회의소의는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첫째, 농민의 의견을 정부 시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농림수산성 장관의 자문에 대해 농민의 의견을 반영한 답신을 하였고, 이후 농지시책, 농지유동화 시책, 농민연금 시책 등으로 반영되었음.
 - 둘째, 후계자 확보·육성과 경영개선 대책을 하고 있음. 농외로부터 취농 희망자에 대한 농지 정보를 제공하고 신규 취농자의 확보, 농업경영의 법인화추진, 가족 경영 협정의 체결 촉진 등을 추진해 오고 있음.
 - 셋째, 우량농지의 확보와 후계자의 농지이용집적에 관한 업무를 하고 있음. 농지의 무단 전용방지, 농업위원에 의한 농지 이용 집적의 알선, 상담 등의 추진 활동을 하는 것으로 우량 농지의 확보, 농지 이용권 설정 증가 등의 성과를 올리고 있음.
 - 넷째, 농업 시책의 정보제공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농업·농지 시책의 정보

- 공급을 위한 신문사업, 도서 출판사업을 실시하여 농업 시책의 계발에 역할을 하는 것임.
- 다섯째, 농지 경영에 관한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농지가격, 소작료 등 기초적인 데이터에 대해 농업위원회 계통조직을 활용하여 전국적으로 조사를 지속해 오고 있음.
- 농민의 의견을 정부 시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인정농업자 의견교환회, 농업위원회 회장단 대회 등을 개최하고 있으며, 의견을 모아 정부에 요청을 하고 있음.
- 기본적으로 시정촌 농업위원회의 요구를 듣고 있으며, 정책대안 및 개선사항에 대한 의견을 모으기 위해 인정농업자 의견교환회를 개최하고 있음. 또한 농업위원회 회장단대회를 1년에 2회 개최하고 있으며, 이러한 의견을 종합하고 정리하여 정부에 요망자료로 제출하고 있음.
 - 2000년도를 끝으로 농림수산성 장관의 자문에 답신을 하는 역할은 마무리되었음. 법령상 자문에 대한 답신은 농업회의소의 역할이고 다른 기관에서는 자문을 하지 않았었음. 2001년부터 자문에 대한 답신이 아니라 회장단대회가 끝나고 관련 장관, 관련 부처·청에 직접 요청을 하고 있음.
- 후계자 확보·육성과 경영개선을 위하여 신규 취농 인재대책과 가족경영 협정을 추진하고 있음.
- 신규 취농 인재대책은 최근 업무 변천과 관련된 부분임. 예전에는 농가의 후계자 자체가 농업인의 후세대였는데, 지금은 비농가 출신이 많음. 비농가 출신의 신규 취농을 원하는 사람이나 농업법인에 취업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한 상담 등을 하고 있음. 이 사업은 보조금으로 추진하고 있음.
 - 신규 취농과 관련하여 전국 단위로는 농업회의소가 역할을 하고 있지만, 현 단위에서는 농업회의 또는 농업공사, 청소년 육성센터, 보급센터 등에서도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가족경영의 근대화 측면에서 배우자 경영자 후계자가 가족이지만 급여, 시간, 노동시간 등에 대해 계약 협정을 맺는 것이 있는데 이에 대해 지도사업을 하고 있음.
 - 농업자 연금제도 관련하여 가입을 권유하거나 지도사업을 하고 있으나 실효성은 크지 않음.
- 농업회의소 계통조직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은 농지법에 기초한 허·인가 업무와 관련한 업무이며 전국농업회의소는 농지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 농지매매에 있어서 농민 팔고자 하는 것에 허가가 필요한데 농업위원회가 허·인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전국농업회의소는 말단 조직이 이러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행하는데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전국농업회의소에서 수행하는 여러 업무의 중요도를 살펴보면, 말단조직에 대한 정보제공 업무가 성격상 가장 중요한 역할이며, 간접적인 정보제공, 위탁 사무 순임.
 - 간접적인 정보 제공은 출판사업, 신문발행 등이 있음.
 - 위탁 사무는 예를 들어 최근 “농의 고용사업”이라는 것이 있는데, 농업생산법인이 젊은 사람을 고용했을 때 연수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임.
 - 성격상으로 보면 업무 중요도는 농지 관련 정보제공, 간접적 정보제공, 위탁사무 순이지만 예산으로 보면 위탁사업의 비중이 가장 큼.

□ 전국농업회의소와 타 조직과의 관계 및 농정에의 역할

- 농업회의소는 농림수산성이 기획하는 농정의 일부를 실시하는 주체로서 고유업무는 현장에 관련된 시정촌의 지도사업, 정보제공이며, 위탁업무는 토지개량 지도업무 등 보조금이 교부되는 것과 관련됨.
 - 일본에는 농정조직이 3단계 체계로 되어 있는데, 이런 체계 하에서 시책의 기본이념은 전달되기 쉽지만, 농지매매, 권리이동, 심사내용 등에 관한 내용의 전달은 효율적이지 않은 측면이 있음.
 - 이에 전국회의소에서 매뉴얼을 작성하고 심사기준을 제공하며 개별 응답을 제공하는 등 행정기관에서 할 수 없는 역할을 하고 있음.
- 전국농업회의소의 농정에의 역할은 농지 및 경작자를 확보하고 육성하는 것이고, 이는 다른 농정조직과의 차별성을 갖는 측면임.
 - 전후 농지개혁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농업위원회가 생겨났음. 농지를 보전한다는 측면에서 농지위원회가 농업위원회로 바뀌면서 여러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음. 이러한 업무를 담당하는 농업위원회를 지도하기 위해서 농업회의소가 생겨난 것임.
 - 따라서 기본적으로 농지 관련된 사항을 주축으로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되어 경작자 확보 측면의 역할을 하고 있음. 즉 농지와 경작자의 확보 육성에 대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이 농업회의소 계통조직의 정체성이자 다른 농정 추진주체와의 차별성임.
- 전국농업회의소는 농지 측면에서 볼 때 농업계에서 가장 대표성을 띠고 있는 기관임.
 - 행정루트를 통해서는 농가의 실질적으로 목소리를 듣기 어려운데, 농업위원회

위원은 선거를 통해 선출되고 이들이 연합이 되어 농업회의를 이루기 때문에 농지와 관련되어 농민의 목소리를 전달한다고 볼 수 있음.

- 농업회의소는 국가로부터 출자를 받았으나 업무운영비 지원은 일체 없는 민간단체임.
- 다만 위탁된 국고보조금 국가가 낸 사업을 응모해서 당선이 돼서 실시함. 한편 상대를 결정해서 하는 사업은 농업회의소가 받아오기도 함.
- 2008~09년은 긴급고용대책 농의 고용 관련 특별기금을 낙찰 받았고 이를 적립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 전국농업회의소 예산

- 2010년도(평성 22년) 농업회의소 일반회계는 약 484백만 엔임.
- 일반회계는 부과금 168백만 엔, 보조금 138백만 엔, 위탁금 82백만 엔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부과금은 전국농업회의소의 회원인 현농업회의, 전국농협중앙회 등으로부터의 회비임.
- 국고보조금으로는 통계사업, 농지정보 관련 인터넷 사업, 연수활동 등을 추진하고 있음.
- 농지가격조사, 노임조사 등 통계사업은 국고보조로 추진하며 농업회의소에서 30년 동안 가격을 조사하고 있음.
- 농지에 관련된 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하여 농지 판매자와 관련한 매칭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는 국고보조로 진행하고 있음.
- 연수활동 역시 국고보조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구체적으로 농업회의, 농업위원들의 연수활동이나 농업위원들의 활동비 지급, 연수회 등이 있음.
- 신문발행과 관련된 예산으로 특별회계가 있으며 2010년도 12억 엔이 배정되어 있고, 출판사업은 4억 5천만 엔 규모임.
- 그 외 기금사업으로는 신규취농사업, 농의 고용사업 등이 있으며 이는 한시적으로 추진되고 있음.

3. 현 농업회의

□ 현 농업회의의 설치 및 조직 구성

- 현 농업회의는 「농업위원회등에관한법률」에 근거해 도도부현 내에 설립된 농업 단체임.
- 현 농업회의는 시정촌 농업위원회 회장과 그 외 농업계 단체의 회장 및 농업 전문가 등이 회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 농업위원회 회장 각 1인
 - 도도부현 농협중앙회장, 부회장, 또는 이사 1인
 - 도도부현 농업공제조합연합회 이사 1인
 - 도도부현 구역 또는 그 일부 구역의 농협 및 농협연합회의 이사 약간명
 - 농업의 개량발달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이사 약간명
 - 학식경험자 약간명
- 현 농업회의에서 총회와 상임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음.
 - 총회는 1년에 두 번 개최하고 있으며, 예산의 보정에 관련된 내용, 직원의 보수 관련 내용, 연도별 사업계획, 예산편성, 거출금의 금액과 납부기한 방법에 대한 내용,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의 차입금의 최고 한도에 대한 내용, 상임위원회의 이동 관련된 보고 등을 내용으로 함.
 - 상임회의원 회의에서는 농지전용허가에 관해 매월 현지사의 자문에 대한 답신을 하는 역할을 함. 회의원은 농업위원회 회장 중에서 15명과 농업관련단체, 현의회, 시정촌의회의 대표 11명 등 총 26명으로 구성되어 있음.

□ 현 농업회의의 주요 업무와 역할

- 현 농업회의의 업무는 농업위원회법 제40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행정청의 자문기관으로서 행정을 보완하는 업무(전속적 업무)와 농업 및 농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업무(비전속적 업무)로 구분됨.
- 전속적 업무는 농지법 등 법령에 의한 것으로 행정 업무를 농업회의가 보완하는 것임.
 - 상임회의원 회의에 관한 업무, 농업위원회운영사무에 관한 업무, 본회계예산집행 및 거출금에 관한 업무, 농지활용추진(경영기반강화법)에 관한 업무, 특수법

인 대부사업에 관한 업무, 총회 및 농업회의의 운영 회의에 관한 업무, 법인화 지원사업에 관한 업무, 경작포기지대책협의회에 관한 업무, 농정대책에 관한 업무 등이 있음.

- 예를 들어 농지 전용 시 현 지사의 허가⁵⁾가 필요하며, 허가하는 경우 농업회의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음.
- 경작포기지협의회와 관련하여 각 지역마다 지역협의회를 설치하여 후계자들에게 토지가 갈수 있게끔 하는 협의회를 설립하는 것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음. 협의회는 시정촌 농정과 또는 농협에 설치하고 있으며 구성원은 시정촌, JA 등임. 그러나 경작포기지가 최근 5년간 급속하게 생겼으므로 대책을 세워야 했고 이는 실제로 사후대책 측면이 있음.

○ 비전속적 업무는 농업 및 농업자의 대표기관으로서 실시하는 업무로 현 내의 농업·농민에 관한 사항에 의견을 공표하거나 행정청에 건의⁶⁾ 또는 자문에 답신하는 업무임.

- 그 외에 농업·농민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업무, 농업 및 농민에 대한 조사 연구 업무, 농업위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강습과 연수, 시정촌 농업위원회에 대한 조언과 협력, 기타 부대업무 등이 있음.
- 정보를 제공하는 업무로는 신규 취농 희망자와 고용농가에 대해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업무, 농업회의와 농업회의소 직원을 대상으로 한 연수회 개최, 법인화 지원사업, 현 내 농업경영연구회에 관한 사무 등이 있음.

□ 현 농업회의와 타 조직과의 관계

○ 현 농업회의는 계통 조직 내에서 전국농업회의소의 방침을 따르면서 지역에 맞게 변형시켜 적용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조직의 필요성이 존재함.

- 전국농업회의소는 수적인 측면에서 농업위원회를 한 번에 지도하기 어렵고 지역마다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현 농업회의는 전국농업회의소와 시정촌 농업위원회 사이에서 중간자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
-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령업무는 농업회의소가 농업회의를 따르게 되어 있으나, 임의업무에 대해서는 자발적이기 때문에 구속력이나 강제성은 크지 않음.

○ 농업 관련 다른 조직과의 관계를 보면, 현 농업회의는 전국농업위원회와 마찬가지로 농지와 관련하여 대표성이 있음.

- 현 내에서 행정은 현청이고, 농업 관련 단체로는 농협이 가장 규모가 큼. 그러

5) 농지 전용면적이 4ha 이하의 경우 도도부현지사의 허가가 필요하며 그 이상은 농림수산성 대신의 허가가 필요하다.

6) 농업회의에서 농업위원회 요망을 정리하여 현지사에게 요망서를 제출하고 있다.

나 농지와 관련해서는 농업위원회 계통조직이 가장 대표성이 있음.

4. 시정촌 농업위원회

□ 시정촌 농업위원회의 설치 및 조직 구성

- 농업위원회는 선거에 의해 선출하는 선거위원과 선임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 임기는 3년임.
 - 선거위원 수는 각 시의 농지면적, 농지면적에 의해 결정되며, 선임위원은 농협 이사 1인, 농업공제조합의 이사 1인, 토지개량구의 이사, 학식경험자 4인 이내 등으로 구성됨.
 - 사이타마시의 농업위원회 위원은 38명이며, 이 중 선거위원은 30명까지 구성할 수 있게 되어 있으나 법률상으로는 40명까지 선출 가능함.
- 농업위원회는 농지부회와 농정부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선거구 내에 심의회를 두고 있음.
 - 부회는 선거위원이 21명 이상인 농업위원회에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의무는 아니며, 한편 심의회는 비교적 규모가 큰 지자체 농업위원회에서 설치·운용하고 있는데 법률에서 규정하는 것은 아님.
 - 농지부회는 농지전용, 임차전용, 소유권 이전 등을 담당하고 20명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음. 한편 농정부회는 정책 업무, 유휴농지 관련된 지도 업무를 담당하며 농지부회에 속하지 않는 위원들이 속함.
 - 사이타마시는 5개의 시가 합병되어서 한 번에 사람이 모여서 결정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각 지구에 심의회를 설치하고 있으며 심의회에서 농지 관련 결정을 검토하는 단계를 거치고 있음.
- 선거는 공직선거법이 정하는 절차에 준하여 진행되며, 시정촌 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하고 있음.
 - 선거구 정수는 선거구의 유권자수에 의해 정해지며 정원수는 법률에 규정되어 있음. 사이타마시 농업위원회의 경우 선거구가 3곳으로 나누어져 있음.
 - 선거구를 정해둔 이유는 한 곳에 집중되어 뽑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임.
- 유권자는 농업인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요건은 다음과 같음.
 - 유권자 자격은 10아르 이상 경영하고 있는 농업경영자 또는 60일 이상 경작에 종사하고 있는 동거가족임.

- 유권자 자격을 가진 자가 신청을 하면 유권자가 됨. 매년 여름에 농지관련 조사를 하고 있는데 각 농가의 경작 면적, 경작 시간을 조사하고 있고, 그때 유권자 신청을 함께 받고 있음.

○ 농업위원회 사무국은 농지조정과 농업진흥과로 나뉨.

- 사무국의 직원 수는 20명이고, 농지조정과에서 농지법 법률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농업진흥과에서 그 외 다른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 시정촌 농업위원회의 주요 업무와 역할

○ 농업위원회는 법령업무, 임의업무, 그 외 의견 공표 및 건의 등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법령업무로는 농지법에 의거한 농지 등의 이용 관계의 조정 및 자작농의 창설 유지에 관한 업무, 토지개량법 등에 의한 농지의 교환·분합에 관한 업무, 기타 법령에 의한 업무가 있음.
- 임의 업무로는 농지 등의 이용관계에 대한 알선 및 쟁의 방지, 농지 등의 교환·분합의 알선, 농업·농촌에 관한 진흥계획의 수립 및 실시, 농업생산 농업경영에 관한 조사 연구 등이 있음.
- 그 외에 농업위원회는 농업과 농민에 관한 사항의 의견 공표, 행정청에 건의, 자문에 대한 답신의 업무도 수행하고 있음.

○ 실제 농업위원회가 담당하는 주요 업무는 농지조정과의 업무, 즉 허·인가 업무, 상속세 관련 증명서 발급, 농지 이용 관련 업무 등이 있으며, 토지 관련 신청 업무, 자료 수집, 선거구 심의회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음.

○ 후계자 육성과 관련해서 사이타마시 농업정책과와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신규 취농자 및 귀농자 농지임대 원조, 농기계 지원사업, 농지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 보조사업 등을 하고 있음.

○ 농지매매 신청이 있을 때 신청서 안에 농지가격 등을 조사하고 있음.

- 농가를 대상으로 조사표를 보내 작성하던 것은 없어졌고, 대신 임차료와 관련해서 경영강화촉진법에 의해 매년 농지가격조사를 추진하고 있음.

○ 가족협정 및 농업자연금제도와 관련하여 농업정책과에서 가족협정을 추진하고 있으나 사인을 하는 수준으로 실효성은 미미한 편이며, 농업자 연금제도를 추진하고 있으나 유사한 연금제도가 있기 때문에 새롭게 연금에 가입하는 농가는 거의 없음.

- 유희농지 문제가 심각하여 농업위원회에서는 유희농지와 관련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 그러나 농산물 가격이 하락하여 소득이 생기지 않으므로 농사를 짓지 않는 경우가 있고, 그 규모는 450만 ha에 이름.
 - 농지관리를 하지 않았을 경우 농지세가 부과됨. 이용에 대한 계획서를 내도록 하고 있으며 법률상으로 권고조치가 생겨났지만 실질적으로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음. 또한 현이 그 소유권을 이전시킬 수 있기는 하지만, 그런 것이 적용되지는 않고 있음.
- 농지기본대장 전산화 사업은 각 시정촌마다 수작업으로 기장하는 곳, 전산화 등 격차가 있기 때문에 이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하는 추진되는 사업임.
 - 사이타마시는 경영자가 품목 정보까지 작성하도록 하고 이를 전산화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며, 이는 농업정책과에서 정책을 수립하는데 이용하게 될 것임.
- 건의, 요청, 요망 활동은 매년 거의 똑같은 업무를 반복하고 있음.
 - 현에 대한 요망은 농업회의로부터 제출이 되고, 시에 대한 건의나 요청은 농업위원회 회장과 농정부회장이 하고 있음. 현 관련 요청은 활발하지 않고, 시에 대한 요구는 많아지고 있음.
 - 요망은 거의 비슷한 내용이 반복되고 있는데, 유희농지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작하고자 하는 사람이 경작하도록 해 달라거나, 이와 관련한 농지정비에 관한 내용이 많으며 관련 지원제도에 대한 요구도 있음.
- 외국인 연수생 제도는 주로 항구 인접한 지역에서는 추진하고 있는데, 사이타마시에서는 추진하지 않고 있음.
- 사이타마시 2010년 예산 4,290억 엔 중 14억 엔이 농업예산이며, 농업위원회 예산은 5,700만 엔으로 시 예산의 0.01%임.
 - 농업위원회 예산은 사이타마시의 일반회계가 4,880만 엔(86%), 국고보조가 820만 엔 (14%)으로 구성되어 있음.

□ 시정촌 농업위원회와 타 조직과의 관계

- 현 농업회의와는 농지전용허가에 있어서 현 농업회의의 의견을 받아야 하므로 매월 회의해야 하고 이것이 교류의 대부분임.
 - 농지법 개정 설명 등은 농업회의의 의견을 받아야 했기 때문에 농업회의와 교

류했음.

- 농업회의소 계통조직은 3단계로 되어 있지만 업무 측면에서는 거의 교류가 없는 편임.
- 농업계의 대표성은 지역에 따라 다르며 토지개량구, 행정조직 등이 대표성을 띠기도 하는데, 최근 농업위원회는 그 역할이 축소된 듯함.
- 사이타마시 농업위원회는 합병되고 나서 선거위원 수가 줄어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농업계 대표성이 약해졌다고 생각됨.